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목 차>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작 성 자	이름	이미선
	담당부서 (과)	환경피해구제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조현수		연락처	044-201-6814
	과장	손삼기		이메일	lms1479@mail.g o.kr

2026. 05. 07.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조현수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2.규제조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42조의 3 별표 3의3								
	3.위임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 30조의 6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5.18~2026.06.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 26.2)되어,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7.규제내용	○ 감리인 업무부실에 따른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석면해체 작업감리인</td><td>1,020개소(26년)</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석면해체 작업감리인	1,020개소(26년)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석면해체 작업감리인	1,020개소(26년)								
9.규제목표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부실감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부실감리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감리인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나,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적정 감리 도모 등을 통한 감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이에 따른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는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2. 개별기준				[별표 3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법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꿔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의6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마.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후에 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2항제2호	6개월 이내의 시정명령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아.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신설>	<신설>	<신설>		자.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8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신설>	<신설>	<신설>		차.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한 평가	법 제30조의6 제1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현 행			개 정 안			
			결과, 기후에너지환경 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의 6제1항제10 호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신 설>	<신 설>	<신 설>	타.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 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11호	등록취소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준용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부실감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6.2)되어,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 대안	대안명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내용	•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구분	장점	단점
규제 대안	• 기존 법 위반 유형에 따른 처분 기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 처분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에 대한 수용성 및 예측성을 제고	•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유형별 처분 세분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양형 수준의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26.2.19.)으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근거*가 변경·신설되어 '27.2.20.부터 시행 예정

* ①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⑥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법에서 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제재 처분의 사유와 처분 가능한 제재의 유형을 명시하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처분 기준을 구체화

- 기존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타 유형에 대한 세부 제재 기준이 존재하므로 기존 기준 내용, 위반 행위 유형별 처분 수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제재 기준을 설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부실감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해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부실감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석면 노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에 해당하므로 일몰설정 예외기준에 해당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을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로 규정

40 CFR Appendix C to Subpart E of Part 763—Asbestos Model Accreditation Plan

6. Project Monitor

G. Deaccreditation

1. States must establish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accrediting persons accredited as workers, contractor/supervisors, inspectors, management planners, and project designers. States must follow their own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pursuing deaccreditation actions. At a minimum, the criteria shall include:
 - (a) Performing work requiring accreditation at a job site without being in physical possession of initial and current accreditation certificates;
 - (b) Permitting the duplication or use of one's own accreditation certificate by another;
 - (c) Performing work for which accreditation has not been received; or
 - (d) Obtaining accreditation from a training provider that does not have approval to offer training for the particular discipline from either EPA or from a State that has a contractor accreditation plan at least as stringent as the EPA MAP.

EPA may directly pursue deaccreditation actions without reliance on State deaccreditation or enforcement authority or actions. In addition to the above-listed situations, the Administrator may suspend or revoke the accreditation of persons who have been subject to a final order imposing a civil penalty or convicted under section 16 of TSCA, 15 U.S.C. 2615 or 2647, for violations of 40 CFR part 763, or section 113 of the Clean Air Act, 42 U.S.C. 7413, for violations of 40 CFR part 61, subpart M.

2. Any person who performs asbestos work requiring accreditation under section 206(a) of TSCA, 15 U.S.C. 2646(a), without such accreditation is in violation of TSCA. The following persons are not accredited for purposes of section 206(a) of TSCA:
 - (a) Any person who obtains accreditation through fraudulent representation of training or examination documents;
 - (b) Any person who obtains training documentation through fraudulent means;
 - (c) Any person who gains admission to and completes refresher training through fraudulent representation of initial or previous refresher training documentation; or
 - (d) Any person who obtains accreditation through fraudulent representation of accreditation requirements such as education, training, professional registration, or experience.

○ 타법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부실감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6.2)되어,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기존 제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규제 준수율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부실감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6.2)되어,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도 행정역량이 요구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석면 해체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석면안전관리법」 개정 (박해철 의원), '26.2)
- 개정령안 관련 내부 검토 및 보고('26.4)

2. 향후 평가계획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감리 여부를 관리할 예정

3. 종합결론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해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부실감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규제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부실감리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감리인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나,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적정 감리 도모 등을 통한 감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이에 따른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는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활동제목	영업정지
비용항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부실감리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감리인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나,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적정 감리 도모 등을 통한 감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이에 따른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는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됨